



공중인가
법무법인

비 전

[별지 제33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26년 제 11211호

인 증 서

정기주주총회 의사록

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

위 회사는 서기 2026. 03. 30. 9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

주주의 총수 : 9명
(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사주 32,640주 포함)

발행주식의 총수 : 500,000주

출석 주주수 : 2명

출석 주주 보유주식수 : 368,686주



의장인 이승준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출석한 주주의 보유주식총수가 상법 제368조 1항의 정족수를 충족시키므로 이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감사보고, 영업보고를 마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의장은 상법 제447조 및 449조에 의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을 구한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승인의 건

의장은 상법 제 388조 및 정관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한 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.

- 다 음 -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48조에 의거 회사 임원의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① 이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

임원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팀으로 한다.

제4조(퇴직급여의 산정)

①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은

[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(기본금+상여금) X 1/10 X 재임연수 지급률]로 한다



공증인가
법무법인 비 전

[별지 제37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26 년 제 11211호

인 증

위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----- 의

2026년 03월 30일자 정기주주총회-----

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이승준 의 대리인 겸 주주 이상은 은-----
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,-----

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-----
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

을 확인 하였다.-----
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-----에 의하여

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

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-----

2026년 03월 31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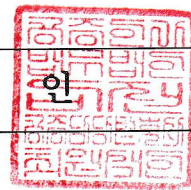
공증인가
법무법인 비 전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공증담당변호사

Handwritten signature



아 래

1. 공증촉탁서, 2. 진술서, 3. 확인서, 4. 주주명부, 5. 위임장-----

6. 인감증명서, 7.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8. 정관-----